



검사 업무방침 편람
CROWN COUNSEL POLICY MANUAL

ARCS/ORCS 파일 번호: 56680-00	발효일: 2011년 3월 9일	업무방침 코드: SPO 1
주제: 배우자 폭력	상호 참조: ALT 1 CHA 1 CHI 1 CRI 1 REC 1 RES 1 SEX 1 VIC 1 실무 고시	

업무방침

캐나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실로, 가정 폭력의 증대성과 비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이 같은 현상에 언론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가정 폭력의 편만성과 각계 각층의 여성에게 가해지는 끔찍한 영향이 모두 드러났다. (R. v. Lavallee [1990] 1 S.C.R. 852)

배우자 폭력은 다음과 같이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뚜렷한 동력이 있다.

-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난다.
-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재정적 영향이 오래 지속되고 값 비싼 대가를 치른다¹.
- 학대의 악순환이 외적 요인에 의해 저지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경찰이나 법원의 개입 등 외적 간섭이 있으면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자는 재정적, 정서적으로 가해자와 연결돼 있어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면 역으로 피해자가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 폭력의 정도가 치명적일 수 있다. 캐나다 내 살인 사건은 5건 중 1건 꼴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저질러진다².

1 캐나다통계청 - 여성 폭력의 계량화-통계적 추세(Measuring Violence Against Women - Statistical Trends) 2006, p.34.

2 캐나다통계청 - 여성 폭력의 계량화-통계적 추세(Measuring Violence Against Women - Statistical Trends) 2006, p.21.

형사사법국은 배우자 폭행이 매우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이므로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사전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특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형사사법국은 이 경우 중추 기관이 됨을 인정하며, 사법제도상의 유관 기관들과 능률적인 협력 및 공조에 전념한다.

본 업무방침의 적용

이 업무방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배우자 폭력 범죄는 양 당사자가 폭행 또는 위협 당시 법률혼 상태이든 사실혼 상태이든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밀접하고도 개인적인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가져온 자로 정의된 친밀한 파트너에게 가하는 신체적 또는 성적 폭행, 혹은 신체적 또는 성적 폭행 위협으로 정의된다. 이런 범죄는 거의 대부분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저지르지만³, 법과 이 업무방침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와 피해자의 성별 또는 성적 성향은 연관성이 없다.

형사사법국은 모든 배우자 폭력 사건을 “K” 파일로 분류한다. 또한, 형사사법국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동력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하므로 범죄성 괴롭힘, 위협 또는 해당 행위가 친밀한 파트너에게 공포, 외상, 고통 또는 손실을 야기하거나 실제로 야기하기 위하여 행해졌다고 결론을 내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기물손괴 같은 신체적 또는 성적 폭행 이외의 범죄와 관련한 사건을 “K” 파일로 분류한다.

형사사법국은 친밀한 파트너가 비록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피고가 친밀한 파트너의 자녀나 새 파트너 같이 친밀한 파트너에게 중요한 사람이나 사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고가 저지른 범죄 행위의 대상이 친밀한 파트너인 사건을 “K” 파일로 분류한다.

아울러, 형사사법국은 위와 관련하여 “K” 파일과 형법 제 810 조 자진출두서약 신청을 근거로 내려진 법원 명령을 위반하여 혐의가 발생하는 사건도 “K” 파일로 분류한다.

혐의 평가

검사법(Crown Counsel Act)에 따라, ‘검사에게 제출하는 보고서’가 경찰로부터 접수되면 검사는 기소 여부 결정 책임을 진다. 혐의 평가 지침-CHA 1 에 관한 업무방침에 따라 검사는 기소의 각 단계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상당한 유죄판결 가능성이 있는지 및 상당한 유죄판결 가능성이 있다면 공익을 위해 기소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의 희망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3 캐나다통계청 - 캐나다의 가정폭력: 통계 개요(Family Violence in Canada: a Statistical Profile) 2009, p.25

형사사법국은 배우자 폭력 사건의 경우 증거확보 검사(test)를 충족하면 기소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익을 위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업무방침 CHA 1에는 피해자가 배우자 같은 취약한 자인 경우 기소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업무방침 CHA 1에는 다음과 같이 특정한 배우자 폭력 사건에 적용되기도 하는 더 낮은 수준의 증거확보 검사가 상술되어 있다.

예외적 상황에서는 통상적인 증거확보 검사가 충족되지 않아도 기소를 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 예외적 상황은 아주 위험한 폭력범이나 위험한 범죄자가 연루된 경우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최우선적인 고려 대상인 경우에 가장 자주 발생한다. 이 같은 경우, 혐의 결정은 반드시 지역 검사 또는 차석 지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거확보 검사(test)는 유죄판결을 받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검사(Crown Counsel)가 확신하는가이다.

검사는 배우자 폭력 문제에 종종 내재하는 동력을 명심해야 하며 피해자가 검사 측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근원에서 피해자에게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검사는 형사 소추 개시 또는 중단 결정이 전적으로 검사에게 달려 있음을 원고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증거의 유효성 및 공익 추구 요인을 기준으로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검사는 형법(Criminal Code)의 폭행 규정 이외의 조항들에 따라 적절한 경우 범죄성 괴롭힘, 위협, 기물손괴 등의 혐의를 부여하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 이 같은 범죄가 배우자 폭력을 유발하는 일부 동력인 경우, 지속적인 범죄일 때가 잦으므로 피해자는 지속적인 공포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기소상의 공익이 분명 존재한다. 증인이 위협이나 간섭을 받았다고 검사가 판단하는 경우 사안을 경찰에 다시 넘겨 조사 또는 재구속하게 해야 한다. 적절한 실제법상의 위반 혐의를 부여하는 것은 폭력이나 협박의 재발에 대처하려는 시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범죄성 괴롭힘에 관한 형사사법국 업무방침 CRI 1 참조.

법원 명령 위반은 미래의 폭력과 직결된다고 확인된 위험 요인이므로, 검사는 적절한 경우 보석 및 보호관찰 명령 위반 혐의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말해, 실제적 혐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위험이 크다고 확인된 상황에서는 이 같은 혐의를 부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위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교정국(Corrections Branch)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더불어 미래의 보석에 대한 위험 평가 및 양형 심리에도 영향을 준다.

드문 경우, 법원 명령을 지키지 않은 혐의가 피해자나 아동의 안전에 우려를 제기함에도 형법상의 혐의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하여 가족관계법(Family Relations Act)에 따라 혐의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안전은 언제나 형사사법국의 우려 사항이다. 따라서, 혐의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소송 중지가 적절한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안전을 이유로 **형법 제 810 조**에 따라 자진출두서약을 신청할 때 승인될 가능성 및 피고가 피해자에게 개인적 신체 손상을 유발하거나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개연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비교 검토하여 자진출두서약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숙고해야 한다. 검사는 특별히 배우자 폭력 범죄자를 겨냥하여 “관계 폭력 예방 프로그램”(The Relationship Violence Prevention Program)이라는 제목으로 교정국이 시행하는 감독 프로그램이 자진출두서약의 조건으로 적절한지 숙고해야 하고 **형법 제 810 조 ‘자숙서약’(Recognizances to Keep the Peace)**에 관한 형사사법국 업무방침 **REC 1**에 상술된 지침을 숙고해야 한다. 이 교정국 프로그램에 관한 그 외 사항은 부록 A에 제공돼 있다.

상호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상호 자진출두서약은 대개 적절하지 않으며, 같은 사건에서 비롯하는 상호 혐의는 여간해서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는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에 역점을 두는 것이 권장된다.

- 누가 과도한 주 도발자인지 판별(일차 도발자 또는 지배적 도발자라고도 함)
- 폭행을 방어적 자기 보호 또는 합의된 싸움과 구분

업무방침 **CHA 1**에 따라 검사는 “검사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경찰이 권고한 사항과 다르게 혐의 평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보석

배우자 폭력 사건 고유의 잠재적 위험을 인정하여 배우자 폭력에 특화된 표준 보석 조건이 개발돼 피해자의 안전이 더욱 잘 보장된다. 이 같은 조건은 “가정 폭력의 지역사회 감독을 위한 최상의 관행과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부록 B에 첨부돼 있다. 이 표준 보석 조건은 해당하는 경우 검사가 석방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경우에 고려해야 한다. 검사는 총기와 기타 무기의 소지 및 인도와 관련하여 제안된 조건들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보석에 관한 견해를 만들때 있어 검사는 피해자와 다른 가족, 특히 자녀의 안전을 특히 고려해야 하며, 피고에 의해 제기된 위험과 관련하여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드시 숙고해야 한다. 관련 추가 정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는 보석 적부심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경찰에 그러한 정보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계속 구금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자나 그 외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때는 언제든지 구금 명령이나 석방 조건을 모색하여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경찰이 피고의 보석을 처리해야 하거나 피고를 정규 근무 시간 후 사법 센터(Justice Centre)에 계속 구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제안된 석방 조건이나 계속 구금 사유를 명시해 경찰에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구속됐다가 출두 약정이나 조건부 자진출두서약에 따라 경찰에 의해 석방된 경우, 검사는 해당 조건을 검토해 피해자 보호에 적당한 조건인지 또한 집행 가능한 조건인지 확인해야 한다. 석방 조건이 집행 불가능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필요하다면 **형법 제 499 조 (4)항, 제 503 조 (2.3)항 또는 제 512 조**에 따라 영장 및 조건의 수정을 청구해야 한다.

피고가 1 차 출두일 전에 경찰이 명한 조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 검사는 경찰로부터 ‘검사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받은 후 해당 검토 요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야 된다.

피해자가 피고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접촉 금지” 보석 조건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검사는 피고와 피해자 간 관계의 전력에 대한 추가 정보와 더불어 피해자나 보석 감독관 또는 경찰과 같은 출처로부터 피고의 배경에 관한 정보도 구해야 한다. 학대 또는 피해자가 위협해질 수도 있는 징후의 전력이 있으면, 검사가 보석 조건 검토에 동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검사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결혼, 자녀 양육권, 자녀 면접교섭, 자녀 복리 후생 등과 관련한 명령을 비롯해 피고에게 영향을 주는 기타 모든 법원 명령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야 한다. 검사는 이런 명령들이 보석 적부심에서 명해지는 석방 조건들과 상충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런 명령들에 관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해야 한다.

검사가 유효 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피고가 타인의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가하거나 타인을 사망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금 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형법 제 515 조 (12)항이나 제 516 조 (2)항**에 따라 “접촉 금지” 명령도 신청해 피고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자와 연락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 구금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 외 일반 대중을 보호할 조건을 부여해 달라고 법원에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검사는 행정 검사(Administrative Crown Counsel)와 협의하여 보석 재심리를 즉각 고려해야 한다.

‘관계 속의 여성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in Relationships)(VAWIR)에 관한 부처간 정책에는 “최고 위험”으로 분류되는 사건의 확인 및 절차에서 경찰이 할 일에 관해 다음과 같이 두 단락이 포함돼 있다.

출동 경찰관이 예비 조사를 토대로 가정 폭력 사건에 최고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들 때는 자신의 상관이나 정식 위험 평가 훈련을 받은 전문 수사관에게 연락해 우려 내용을 전달한다. 상관이나 전문 수사관은 B-SAFER 위험 평가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경찰이 (B-SAFER 착수 여부와 관계 없이) 사건을 최고 위험으로

배우자 폭력	6/23	SPO 1
--------	------	-------

분류하는 경우, 상관이나 전문 수사관은 이 절차의 유관 부서들에 통보하도록 한다.

최고 위험 사건에서 B-SAFER 위험 평가가 착수됐다면 ‘검사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조사 내용, B-SAFER 위험 평가 결과 요약, 피해자(및 위험에 처한 그 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사항, 아동 안전 보호에 대한 우려 사항, 위험에 관한 의견(보호 조건, 구금의 필요성 등에 대한 권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 가족 구성원 및 증인의 자세한 연락처 정보와 기타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논의” 항의 B-SAFER 위험 요인 목록 참조.

검사는 보석 적부심에 관한 B-SAFER 위험 평가 이용과 관련한 도움말을 제공하는 실무 고시를 검토해야 한다.

경찰이 “최고 위험”으로 지정한 사건에서, 검사가 모든 유효 증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나서 전술한 검사(test)에 따라 구금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경찰이 권고한 보석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검사는 보석 적부심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경찰에 의견을 물어야 하고 고려할 만한 증거가 더는 없는지 문의해야 한다. 경찰에 의견을 물은 다음에도 견해가 계속 일치하지 않으면, 검사는 지역 검사나 차석 지역 검사와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검사는 검사 측 의견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약술하는 메모를 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검사는 다른 모든 사건에서 경찰에 의견을 묻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찰이 “최고 위험”으로 지정한 어떤 사건에서든 보석 조건 위반 혐의가 있어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만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는 보석 취소를 신청하고 구금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검사는 보석 위반 혐의가 있는 다른 모든 사건에서도 그러한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

검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 특별히 어린이의 안전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 검사는 배우자 폭행 문제를 신속히 다루고 혐의 평가 결정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검사는 조기 공판을 요청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

아동가족지역사회서비스법(*Child,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Act*) 제 14 조에 의하면 아동이 (정의된) 부모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성적으로 학대 또는 착취를 당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모든 사람은 이를 아동가족개발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MCFD) 지정 대리인(아동복지사)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보고서를 작성했거나 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동법에 정의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검사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하는 보고서 양식의 예는 부록 C

참조.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검사는 **형법 제 486 조**(“주저하는 증인” 이하 참조)에 따라 공포 금지 및 증언상의 편의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사건에서 부여된 혐의, 석방 조건, 기타 진전 사항 등의 정보가 때맞춰 제공되어야 한다. 검사는 *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의 정보 요건과 범죄 피해자에 관한 형사사법국 업무방침 **VIC 1**을 유념해야 한다. **VIC 1**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안전이 특히 우려되거나 피해자가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는 타당한 조치를 취하여 기소 과정의 모든 변동 사항, 미래의 공판일, 보석 조건 등을 피해자에게 행정 지원 직원이 직접 알리거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알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경찰이 “최고 위험”으로 지정한 사건에서, 검사 또는 지명된 검사 측 요원은 석방, 석방 조건, 법원 처분 등이 피해자와 경찰에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지게 해야 한다. 그러면 피해자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연락할 태세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검사는 해당 지역의 합의된 관행상 검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한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경찰이 다른 사법/아동복지 유관 부서에 가능하면 빨리 통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심리 준비

관련 위험 요인을 고려하고 유효 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마치고 나서 심각한 신체 상해 또는 사망의 잠재성이 상당하다고 결론을 내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공판 날짜가 잡히도록 해야 한다. 실행 가능한 때는 언제든지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경찰, 피해자 서비스, 아동가족개발부(MCFD) 등과 업무 연락 및 협조 증대
- 공판 담당 검사 조기 배정
- **형법 제 486 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용 가능한 증언상의 편의 요청 여부 조기 확인 및 통지

주저하는 증인

배우자 폭력 사건을 기소하다 보면 주저하는 피해자나 그 외 증인들이 있다. 복잡한 요인이 형사 사법제도에 협조하려는 이들의 자발적 의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피고가 법원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는 관계 속에 존재하는 폭력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폭력 자체를 부인할 때가 잦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피해자 서비스가 개입하면 피해자가 법원 절차를 끝까지 견디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검사는 증언을 주저하는 이유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증인이 위협이나 간섭을 받아왔다면 검사는 이 문제를 경찰에 의뢰해 조사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가 증언할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검사는 증언 이외의 독립적인 보강 증거 같은 증거가 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숙고해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증언 소환장을 당사자가 직접 받게 송달해야 한다. 검사는 법정에서 나오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중요 증인 출두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피해자가 증언할 가능성 및 사건의 정황(혐의가 있는 학대의 심각성과 아동 및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등)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검사는 행정 검사와 협의한 후 중요 증인 출두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검사는 **형법 제 486 조**에 따라 증언상의 편의나 공표 금지가 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 성범죄에 관한 형사사법국 업무방침 **SEX 1** 내 지침 참조. **형법 제 486 조**에 따라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은 다음과 같다: 일반인 퇴장(제 486 조 (1)항), 동반자 대동(제 486.1 조), 증인이 다른 방에서 또는 휘장 뒤에서 또는 기타 장치로 증언(제 486.2 조), 지정 변호사에 의한 반대신문(피고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제 486.3 조), 원고의 신원 공표 금지(제 486.4 조).

대안 조치

혐의 평가 지침에 관한 형사사법국 업무방침 **CHA 1**에는 피해자가 배우자 같은 취약한 자인 경우 기소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증거확보 검사(test)를 충족하는 실체적 범죄(폭행 등)는 일반적으로 기소하는 편이지만, 기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여전히 성취할 수 있다면 대안 조치를 고려하기도 한다.

기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실 관계를 토대로 한 사건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기소의 의도가 폭력범을 일정 기간 구금하거나 법원이 감독하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부과하여 사회와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것이라면 대안 조치는 부적합하다. 반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범인에게 책임감을 고취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런 목적은 대안 조치로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배우자 폭력	9/23	SPO 1
--------	------	-------

배우자 폭력 사건에서, 대안 조치는 피해자의 우려 사항을 숙고하지 않은 채 고려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경우에만 추구해야 한다.

- 상당한 신체 손상이 없다
- 배우자 폭력의 전력이 없다
- “논의” 항에 약속된 위험 요인 및 교정국이 제공하는 위험 평가와 같은 관련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유효 증거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검사가 심각한 상해를 낳을 수 있는 추가 범죄의 위험이 크다는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 그리고
- 대안 조치 사용은 사회 보호와 부합한다

특히 배우자 폭력범을 상대로 하는 교정국의 “관계 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대안 조치로 의뢰해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님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대안 조치 의뢰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경우 의뢰 전에 혐의를 승인하고 석방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해결책 논의

해결책 논의에 관한 형사사법국 업무방침 RES 1에는 피해자와 경찰에 대한 정보 제공 지침 및 특정 유형의 사건에서 제안된 해결책 논의에 대하여 피해자와 경찰이 검사에게 우려 사항을 표명하는 기회와 관련한 지침이 수록돼 있다. 검사는 배우자 폭력 사건에서 해결책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침들을 재숙지해야 한다.

양형

범죄피해자법 제 4 조에 따라, 검사는 반드시 모든 피해자가 해당 범죄의 영향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생각하기에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신고 전에 법정에 제출할 타당한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

형법 제 718.2 조는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또는 아동에 대한 학대를 양형에서 가중 요인으로 규정한다.

보호관찰이 적절할 때, 검사는 피해자를 보호할 조건을 모색해야 한다. “접촉 금지” 및 보고 요건과 더불어 공격적 행위 개선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수를 포함할 수도 있다.

검사는 범죄자가 교정국에서 제공하는 “관계 폭력 예방 프로그램”(부록 A 참조)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해당한다면 ‘선고 전 보고서’(Pre-Sentence Report)를 요청해야 한다.

검사는 제 743.21 조에 따라, 범죄자에 대하여 선고 구류 기간 중 피해자나 증인과의 직접 또는 간접 연락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 폭력	10/23	SPO 1
--------	-------	-------

검사는 형법 제 109 조나 제 110 조에 따라 무기 소지 금지가 필요한지 고려해야 한다. 무기 소지 금지는 제 109 조, 제 110 조 또는 제 810 조 (3.1)항에 열거된 품목 외 모조 총기도 포함해야 한다.

검사는 제 115 조에 따라 총기를 압류하는 동시에 총기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명령도 제 114 조에 따라 구해야 한다(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제 116 조가 금지 명령 발부에 따른 면허/등록의 자동 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금지 사실이 전자 등록 시스템에 표시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며, 범죄자가 반납할 면허로 다른 총기를 입수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논의

인정된 위험 요인(B-Safer 위험 평가 도구에서)

위험 평가 지침에서는 가해자의 전력 중 관계 문제 존재 여부, 심각한 신체적 및 성적 폭력 여부, 기타 형사 문제 연루 여부, 물질 남용 여부, 취업 또는 재정 문제 등 인정된 10 대 요인을 참조한다. 또한, 피해자의 취약성과 관련한 5 대 요인도 확인한다.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전력)

1. 폭력 행위
2. 폭력적 위협
3. 사태 악화
4. 법원 명령 위반
5. 폭력적 태도

심리사회적 적응(가해자의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전력과 관련한 위험 요인)

6. 일반적 범죄성
7. 친밀한 관계상의 문제
8. 취업 문제
9. 물질 사용 문제
10. 정신 건강 문제

피해자 취약 요인

11. 비일관적인 태도 또는 행동
12. 가해자에 대한 극단적 공포
13. 불충분한 지원 또는 자원
14. 불안정한 생활 상태
15. 건강 문제

부록 A

교정국 관계 폭력 예방 프로그램(Corrections Branch Relationship Violence Prevention Program)

교정국은 형이 선고된 중간 위험도 및 고위험도 가정 폭력범 중 법원으로부터 해당 프로그램 참석 명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 전역에서 관계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연속적인 요소로 구성된다. 교정국 직원이 진행하는 10 주짜리 존중하는 관계(Respectful Relationships) 프로그램을 마치면 계약된 서비스 제공자가 진행하는 17 주짜리 관계 폭력 프로그램(Relationship Violence Program)이 이어진다

이 두 가지를 합친 존중하는 관계 및 관계 폭력 프로그램(Respectful Relationships and Relationship Violence Program)의 기간은 27 주이다(약 6.5 개월). 프로그램 진행 일정상의 현실을 참작해, 두 프로그램을 확실히 이수하게 하려면 거주지에서 최소한 1 년간 여유를 주고 감독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부록 B

가정 폭력의 지역사회 감독을 위한 최상의 관행과 원칙

가정 폭력의 동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다른 범죄와 상당히 다르다.

- 원고가 사전에 알려져 있다.
- 대개 폭력의 반복 가능성이 크고 예측할 수 있는 편이다. 그리고
- 사법제도와 원고 간 상호 작용이 다른 경우보다 대체로 더욱 복잡하다.

지역사회 감독이 권장되는 범주와 조건은 다음 사항들에 도움이 되도록 선택됐다.

- 추가 범죄, 협박, 괴롭힘 등의 예방을 비롯해 원고(들), 원고의 자녀, 위협에 처할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호
- 각개 사건의 현존하는 정황 및 위험 요인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고, 실제 달성할 수 있는 정형화된 명령
- 피고/범인의 의무와 제한 사항을 강조하는 조건을 분명히 표현하는 문구 그리고
- 위반 시 성공적이고 신속한 집행

이런 범주와 조건은 포괄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가정 폭력 피고/범인이 제기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최상의 관행 원칙을 토대로 권장하는 것이다. 가정 폭력 사건마다 고유 위험 요인과 정황이 잠재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건은 그에 따라 수정돼야 할 수도 있다. 고유 조건을 수정하거나 다듬을 때 각 조건 영역과 그 안에 표명된 최상의 관행 원칙을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제안이지만 검사나 법원의 재량 행사에 구속력이 없으며, 검사는 각 사건에서 보석을 더욱 제한하는 조건이 왜 적당한지 그 이유를 밝힐 책임이 있다.

1. 일반/법정 조건

다음 조건을 보석 및 810 자진출두서약 명령(이미 보호관찰과 조건부 선고 명령의 의무 조건으로 존재)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당신은 자숙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 당신은 법원이 요구할 때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 당신은 이름이나 주소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사전에 이를 법원 또는 [보석 감독관 / 보호관찰관 / 조건부 선고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직장이나 직업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이를 법원 또는 [보석 감독관 / 보호관찰관 / 조건부 선고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 당신은 법원 또는 [보석 감독관 / 보호관찰관 / 조건부 선고 감독관]이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하지 않는 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2. 보고 조건

지역사회 교정국이 피고/범죄자를 감독해야 한다는 조건을 삽입하는 것은 법원이 부여한 조건에 부합하는 모니터링과 위험 및 필요 관리에 대단히 중요하다.

- 당신은 [법원이 지정한 날짜의 오전/오후 ___시 전까지 / 이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평일 2일 이내에] [보호관찰관 사무소 주소]에서 보석 감독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하며, 그 후에는 보석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지시된 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명령이 만료되기 전 언제든지 당신이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또 다른 범죄로 복역했다면, 당신은 구금에서 석방된 날로부터 평일 2일 이내에 보석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당신은 [법원이 지정한 날짜의 오전/오후 ___시 전까지 / 이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평일 2일 이내에 / 구금에서 석방된 날로부터 평일 2일 이내에 / 조건부 선고 명령이 만료된 날로부터 평일 2일 이내에] [보호관찰관 사무소 주소]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하며, 그 후에는 보호관찰관이 지시하는 대로, 지시된 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명령이 만료되기 전 언제든지 당신이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또 다른 범죄로 복역했다면, 당신은 구금에서 석방된 날로부터 평일 2일 이내에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당신은 [법원이 지정한 날짜의 오전/오후 ___시 전까지 / 조건부 선고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평일 2일 이내에 / 구금에서 석방된 날로부터 평일 2일 이내에] [보호관찰관 사무소 주소]에서 조건부 선고 감독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하며, 그 후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지시된 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명령이 만료되기 전 언제든지 당신이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또 다른 범죄로 복역했다면, 당신은 구금에서 석방된 날로부터 평일 2일 이내에 조건부 선고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거주지 조건

가정 폭력과 관련한 모든 명령에 거주지 제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피고에 의해 발생한 위험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고 석방 전에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고는 보석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간주해야 하고 검사는 구금 명령 청구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다수 가정 폭력 사건에서 피고는 가족이 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금지된다. 일시적이라도 석방 전에 법원이 구체적인 거주지를 명시/승인하도록 요청/지원하려고 거주지 조건을 다듬을 때, 피고의 책임 및 조건 위반 시 신속한 집행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석방 전에 구체적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조건에 지역사회 교정국 감독관에게 거주지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 당신은 [법원이 승인한 구체적인 주소 기재]에 거주해야 하며, [보석 감독관 / 보호관찰관 / 조건부 선고 감독관]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그 거주지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 당신은 담당 [보석 감독관 / 보호관찰관 / 조건부 선고 감독관]이 사전에 승인한 거주지에 거주해야 하며, [보석 감독관 / 보호관찰관 / 조건부 선고 감독관]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그 거주지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4. 야간 통행 금지 시간

야간 통행 금지 시간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은 범죄의 정황 및 피고/범인의 전력에 따라 추가 예방책이 될 수도 있다.

- 당신은 매일 [오후 _____부터 오전 _____]까지 당신의 거주지 안에 머무르며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보석 감독관 / 보호관찰관 / 조건부 선고 감독관]의 사전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 그러한 허가는 개인, 가족 또는 직장파 관련한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주어집니다. 이 허가서는 본인이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하며 경찰관이 요구하면 제시해야 합니다. 또는
 - 당신의 직장으로 바로 출근하거나 직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 또는 근무 중인 경우. 당신은 요청이 있으면 재직 증명서를 [보석 감독관 / 보호관찰관 / 조건부 선고 감독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당신은 당신의 거주지에 항상 머물러야 하며 거주지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매일 [_____부터 _____]까지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또는
 - [보석 감독관 / 보호관찰관 / 조건부 선고 감독관]의 사전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 이 허가서는 본인이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한 허가는 개인, 가족 또는 직장파 관련한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주어집니다. 또는
 - _____와/과 동행하는 동안, 또는
 - 당신의 직장으로 바로 출근하거나 직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 또는 근무 중인 경우. 당신은 요청이 있으면 재직 증명서를 [보석 감독관 / 보호관찰관 / 조건부 선고 감독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당신은 경찰관/보안관, [보석 감독관 / 보호관찰관 / 조건부 선고 감독관]이/가 당신이 이 명령의 야간 통행 금지 시간/가택 연금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당신의 거주지에 갈 때 거주지의 현관에 본인이 직접 나와야 합니다.

5. 지역 제한

가정 폭력과 관련한 모든 명령에 지역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당신은 [특정 주소 기재]의 [“블록” 단위를 사용해 특정 지역 반경 기재] 또는 당신이 [특정인의 이름 기재]의 거주지나 학교, 직장으로 믿는 장소에 가거나 그 반경 내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단, 다음 경우는 예외입니다.
 - 당신의 개인 소유물을 가지러 갈 목적으로 경찰관/보안관과 동행하여 한 번 다녀오는 경우 또는
 - [접촉하는 특정 목적 기재] 목적으로 [권한을 위임 받은 특정 제삼자의 이름 기재]와/과 동행하는 경우
- [시/지자체 이름 기재]의 시/지자체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은 예외입니다.
 - [보석 감독관 / 보호관찰관 / 조건부 선고 감독관 기재]의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 또는
 - 움직이는 자동차에 타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경우(특정 고속도로 또는 도로 명시)
 - 예정된 법원으로/에서 직행하여 출두 또는 귀가하는 길이거나 예정된 법원에 출두한 상태인 경우 또는
 - [법원이 승인한 기타 특정 목적 기재]
- 당신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_____에서 북쪽 경계는 _____, 남쪽 경계는 _____, 서쪽 경계는 _____, 동쪽 경계는 _____인 지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단, 이 명령을 감독하는 사람의 서면 허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당신은 이 허가서를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하며 요청을 받을 때는 경찰관/보안관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6. 공개 조건

범죄자가 가정 폭력 범행 패턴을 보였을 때는 선고 명령에 지역사회 감독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 당신은 타인과의 결혼생활과 유사한 애정/친밀한 관계, 사실혼 관계 또는 그 외 타인과의 동거 사실을 담당 [보호관찰관 / 조건부 선고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그 [보호관찰관 / 조건부 선고 감독관]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전과를 알려줄 때까지 그 관계를 중단해야 합니다.
- 당신은 타인과의 결혼생활과 유사한 애정/친밀한 관계, 사실혼 관계 또는 그 외 타인과의 동거 사실을 [보호관찰관 / 조건부 선고 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그 [보호관찰관 / 조건부 선고 감독관]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전과를 알려주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7. 약물 및 알코올 조건

알코올 남용은 가정 폭력의 두드러진 위험 요인이며, 상습 폭력과 연관돼 있고, 더욱 심각한 폭력을 부르기도 한다. 약물이나 알코올이 지표 범죄의 요인인 것으로 보이거나 범죄자에게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전력이 있을 때는 자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 당신은 알코올, 비처방 약 또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나 치과의사가 당신을 위해 처방하지 않은 처방약을 소지하거나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 주로 알코올 음료 판매를 위해 면허를 받은 사업장에 가서는 안 됩니다.

8. 무기 조건

형법 제 515 조 (4.1)항에 따라, 폭력을 사용, 위협 또는 시도한 경우 모든 명령에 무기 제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경찰이 피고와 동행하여 구금 장소에서 무기가 보관된 장소로 직행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첫 번째 회수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경찰이 피고와 함께 구금 장소에서 무기 보관 장소까지 동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두 번째 회수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피고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고, 당사자의 안전을 위해 또는 피고가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그 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가능하다면 형법 제 117.04 조에 따라 즉시 압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당신은 어떤 칼이든 소지하면 안 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음식을 바로 조리해서 섭취하는 경우
 - 직업과 직결된 용도인 경우 또는
 - 목공용 칼인 경우. 그러한 목공용 칼은 목공 용도로만 소지하고 해당 목공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 특히 [장소와 주소 명시]에서만 소지해야 합니다.
- 당신은 형법 제 2 조에 정의된 어떤 무기이든 소지하면 안 됩니다.
- 당신은 총기, 석궁, 금지 무기, 제한 무기, 금지 장치, 탄약, 금지 탄약이나 폭발물, 공기총과 복제 총기를 비롯한 모조 무기나 모조 총기를 포함하되 그에 국한하지 않는 모든 무기 및 그와 관련한 모든 승인서, 면허, 등록증 등을 소지, 소유 또는 지참하면 안 됩니다.
- 당신이 또는 누구든지 당신 대신 당신을 위하여 이 명령에서 당신이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어떤 품목이든 소지하거나 보관하고 있으면, 당신은 석방 즉시 [주소 기재]의 [파출소 이름 기재] 파출소에 가서 그 파출소의 경관이나 다른 경관이 당신과 함께 상기 품목이 보관된 장소(들)까지 동행하게 할 목적으로 이 명령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장소(들)에 가면 당신은 당신이 소지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이 명령에서 당신이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모든 품목을 해당 품목에 대한 모든 승인서, 면허 또는 등록증과 함께 순전히 당신이 그러한 품목을 넘겨주는 목적만으로 경찰이 그 장소(들)에 당신이 용이하게 접근하게 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는, 경찰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경찰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따라 경찰에게 넘겨주는 목적을 제외하고, 당신은 해당 품목 중 어느 것이든 소지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그러한 품목을 가지고 있거나 보관하는 거주지에서 거주하면 안 됩니다.

- 당신이 또는 누구든지 당신 대신 당신을 위하여 이 명령에서 당신이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어떤 품목이든 소지하거나 보관하고 있으면, 당신은 석방 즉시 **[검사가 사전에 대기시킨 경관의 계급과 이름 기재]**와/과 이 명령에서 당신이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 품목이 보관된 장소(들)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그 장소(들)에 가면 당신은 그러한 모든 품목을 해당 품목에 대한 모든 승인서, 면허 또는 등록증과 함께 순전히 당신이 그러한 품목을 넘겨주는 목적만으로 경찰이 그 장소(들)에 당신이 용이하게 접근하게 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는, 경찰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경찰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따라 경찰에게 넘겨주는 목적을 제외하고, 당신은 해당 품목 중 어느 것이든 소지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그러한 품목을 가지고 있거나 보관하는 거주지에서 거주하면 안 됩니다.

9. 접촉 금지 조건/간접 접촉에 대한 예외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정확한 이름과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간주할 수도 있는 간접 접촉에 대하여 예외를 두는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가능하다면, 피고와 피해자에게 가정법원 명령/별거 합의서의 존재 여부를 물어 명령 간 의도하지 않은 상충점을 최소화한다.

민사 명령과 형사 명령 사이에 상충점이 있을 때는(예: 합리적인 자녀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법** 명령과 접촉 금지 조건으로 배우자와의 직접 또는 간접 접촉을 제한하는 보석 명령) 민사 명령보다 더 제한적인 형사 명령의 조건이 집행된다.

- 당신은 **[피해자(들), 아동, 가족, 친구, 사업 파트너 및 보호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 기재]**와/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하면 안 됩니다.
- 당신은 **[피해자(들), 아동, 가족, 친구, 사업 파트너 및 보호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 기재]**와/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하면 안 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변호사 또는 가사사건 상담사 (Family Justice Counsellor)를 통해 **[상황에 따라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을/를 목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 가정법원 명령이나 별거 합의서에 따라 당신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주선, 촉진 또는 행사

- 생활유지비 (양육비 및 별거 수당), 재산, 양육권, 면접교섭 등의 문제 해결 또는
- 이 명령이 존재하는 동안/혐의가 해소될 때까지 재정, 보육 등 가족 문제 해결

계속 구금/구금/감치 영장에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조건

형법은 피고/범죄자가 재판 전 및 선고 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연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 3 개 조항에 따른 명령들은 피해자나 그 외 보호받는 당사자들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교정관의 자격을 크게 강화한다. 피고/범인이 수감돼 있는 동안, 특별히 피해자와 다른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동기가 강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와 그 외 사람들을 괴롭힘, 협박, 위협 등에서 보호하는 것과 공판 증거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은 피고/범인이 피해자와 다른 증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달려 있을 수도 있다.

일반 원칙

- 간접 연락의 예외는 피고가 범죄 혐의로 계속 구금 중인 경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접촉 기회는 보호받는 당사자를 위협 또는 협박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 모든 예외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간접 접촉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후 해당 상황에서 법원이 명확히 설정한 목적에 한정돼야 한다. 구금 명령과 선고 명령은 장기간 존속할 수도 있으므로, 보호받는 당사자와 특정 목적을 위한 간접 연락을 고려할 수도 있다.
- 법원이 연락 제한 및 예외 사항을 분명히 설정하면 명령 위반에 따른 집행 조치가 크게 강화된다.

1. 제 516 조 (2)항 - 피고가 보석 적부심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 구금 중일 때 적용 가능

- 집행은 제 145 조 (3)항에 따라 개시된다.
- 제안된 조건은 법원의 후속 명령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검사는 계속 구금 시마다 제 516 조 (2)항을 반드시 재신청하여 사법적 임시 석방 심리 등이 열려 그 심리에서 명령이 내려지는 시점까지 연락 금지 명령이 효력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
 - 당신은 법원의 후속 명령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들), 아동, 가족, 친구, 사업 파트너 및 보호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 기재]와/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하면 안 됩니다.
 - 당신은 법원의 후속 명령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들), 아동, 가족, 친구, 사업 파트너 및 보호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 기재]와/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하면 안 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변호사 또는 가사사건 상담사 (Family Justice Counsellor)를 통해 [상황에 따라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을/를 목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 가정법원 명령이나 별거 합의서에 따라 당신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주선, 촉진 또는 행사
 - 생활유지비 (양육비 및 별거 수당), 재산, 양육권, 면접교섭 등의 문제 해결 또는

- 이 명령이 존재하는 동안/혐의가 해소될 때까지 재정, 보육 등 가족 문제 해결

2. 제 515 조 (12)항 - 피고가 보석 적부심 후 구금 중일 때 적용 가능

집행은 제 145 조 (3)항에 따라 개시된다.

- 당신은 [피해자(들), 아동, 가족, 친구, 사업 파트너 및 보호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 기재]와/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하면 안 됩니다.
- 당신은 [피해자(들), 아동, 가족, 친구, 사업 파트너 및 보호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 기재]와/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하면 안 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변호사 또는 가사사건 상담사 (Family Justice Counsellor)를 통해 [상황에 따라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을/를 목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 가정법원 명령이나 별거 합의서에 따라 당신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주선, 촉진 또는 행사
 - 생활유지비 (양육비 및 별거 수당), 재산, 양육권, 면접교섭 등의 문제 해결 또는
 - 이 명령이 존재하는 동안/혐의가 해소될 때까지 재정, 보육 등 가족 문제 해결

3. 제 743.21 조 (1)항 - 피고가 구치형을 복역 중일 때 적용 가능

집행은 제 743.21 조에 따라 개시된다.

- 당신은 [피해자(들), 아동, 가족, 친구, 사업 파트너 및 보호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 기재]와/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하면 안 됩니다.
- 당신은 [피해자(들), 아동, 가족, 친구, 사업 파트너 및 보호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 기재]와/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하면 안 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변호사 또는 가사사건 상담사 (Family Justice Counsellor)를 통해 [상황에 따라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을/를 목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 가정법원 명령이나 별거 합의서에 따라 당신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주선, 촉진 또는 행사
 - 생활유지비 (양육비 및 별거 수당), 재산, 양육권, 면접교섭 등의 문제 해결 또는
 - 이 명령이 존재하는 동안/혐의가 해소될 때까지 재정, 보육 등 가족 문제 해결

부록 C

아동가족지역사회서비스법 제 14 조에 따라 검사가 사용하는 보고서 양식의 예

Date:

File #:

- Jutland**
Team Leaders: Fax #: 250-952-6060
- Youth Protection**
Team Leader: Fax #: 250-953-3710
- Aboriginal Protection**
Team Leader: Fax #: 250-952-4102
- Peninsula**
Team Leader: Fax #: 250-544-3315
- Westshore**
Team Leader: Fax #: 250-391-2222
- Sooke**
Team Leader: Fax #: 250-642-7751

TO: Community Services Manager

**PH: (250) 952-4707
FAX: (250) 952-5041**

RE: CHILD FAMILY AND COMMUNITY SERVICE ACT, R.S.B.C., 1996, C. 46

PURSUANT TO s. 14, ss. 13, 14, as a result of a Report to Crown Counsel from

_____ Police Department, file # _____,

received _____, 20__, alleging that (*accused name*) _____

(date of birth) _____ may have committed a Criminal offence under Section(s)

_____ of the *Criminal Code*.

(See Attachments of RTCC, Witness Statements and Criminal Record)

검사는 아동 또는 아동들이 다음과 같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름) (생년월일)

(이름) (생년월일)

(이름) (생년월일)

제 13 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 거주지에서. 피해자로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아동이 부모에 의해 신체 상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해당 아동이 부모에게 성적 학대 또는 성적 착취를 당했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해당 아동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 상해나 성적 학대 또는 성적 착취를 당했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및 해당 아동의 부모가 그 아동을 보호할 의지가 없거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아동이 부모의 방임때문에 신체 상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기타

거주지 위치는 다음과 같다.

_____.

기타 의견

날짜: _____

검사 (정자로 기재)

전화번호: